## 정구영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서

- 1. 조정교부금 산정자료 근거 제시
- 2. '92년도 부채현황(이자포함, 특별회계 포함)

예 산 계

# ● 대전직할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_ 1989. 1. 1 ¬ ☐ 조례 제1686호 ☐

-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직할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 2 조 (용어의 의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다.
  - 1. 조정교부금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기준수요액: 각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 3. 기준수입액 :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 4. 측정항목 :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 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 5. 측정단위 :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 6. 단위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 제 3 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과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 제 4 조 (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익익년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 5 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①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 달액(이하"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② 이때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 제 6 조 (기준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 할 때에는 징수교부금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 제 7 조 (기준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 ② 측정 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2에 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자치구의 기준수요액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 비용을 개정 또는 보정할 수 있다.
- 제 8 조 (조정교부금의 산정및 교부시기) ① 시장은 매년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당해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교부금은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전까지 당해 자치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9 조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 제출) ① 시장은 매년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 제 10 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자치구가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

- 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 제 11 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각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및 단위 비용표

(단위: 원)

경 :	비의 종류		측정단위	단 위	단 위 비 율
1.	가. 의 원 경	비	의 원 정 수	1인	4,21,000
지 방	나. 의 원 선 거	비	투표구수	1구	1,133,000
의회비	다. 의 회 운 영	비	의 원 정 수	1인	1,603,000
2.	가. 기 본 급	여	지방공무원수	1인	7급 5호봉해당액
인건비	나. 부 담	귬	지방공무원수	1인	7급 5호봉해당액
	다. 정 액 수	당	지방공무원수	1인	1,046,000
3.	가. 구 행 정	ᆈ	구 공 무 원 수	1인	1,960,000
	나. 동 행 정	비	인 구 수	1인	2,780
일 반	다. 문 화 공 보	ㅂ)	가 구 수	1가구	750
행정비	라. 징 세	비	가 구 수	1가구	630
	마. 건 물	비	건물의연면적	1 m'	4,380
4.	가. 사 회 복 지	비	가 구 수	1가구	640
사 회	나. 생 활 보 호	비	생활보호자수	1인	12,800
복지비	다. 보 건	비	인 구 수	1인	690
980	라. 청 소	비	인 구 수	1인	2,110
5. 산	업 경 제 1	1]	산업인구수	1인	260
6.	가. 도 시 행 정	비	행정구역면적	천m'	1,040
	나. 도 시 토 목	ㅂ)	행정구역면적	천m'	1,950
지역	다. 도 로 투 자	비	행정구역면적	천 m'	25,100
	라. 도 로 유 지	비	도 로 의 연 장	1m	1,580
개발비	마. 공 완 녹 지	비	자연녹지면적	천㎡	3,580
	바. 지 역 개 발	비	인 구 수	1인	140
7. 문	화 교육 1	1	인 구 수	1인	1인 350
8. 민	방 위 1	1	민방위대원수	1인	1인 1,170

(별표2)

##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측 정 단 위	산	정	기	준	표시단위
1. 의원정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의	인
	의회의원 정수				
2. 투표구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치구의	구
	선거구별 투표	구수		i	
3. 지방공무원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	한 당해자치	구의 지방공무	인
	원정원수				
4. 구공무원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	한 당해 자치	구의 지방공무	인
(구행정비)	원정원수 및 :	국가공무원	년수. 다만, <b>등</b>	동의공무원정원	
	을 제외한다.				
5. 인구수	공식으로 일제	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인
М	인구수				
6. 가구수	공식으로 일제	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가구
	가구수				2
7. 건물의 연면적	재무희계규칙역	게 의거 잔	치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유	m'
	재산중 건물대	장에 등록	된 건물의 연	면적	
8. 생활보호자수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	하여 자치구	의 장이 지정한	인
	요보호 대상자	<u></u>			
9. 산업인구수	공식으로 일제	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인
	농업인구수 및	상공업 <u>종</u> /	<u> </u>		
10. 도로의 연장	도로대장에 등	록된 것으	로서_당해 자	치구의 장이 관	m
	<u>리하는 도로의</u>	연장	6		
11. 행정구역면적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	한 자치구 관	할구역의 면적	천m'
12. 자연녹지면적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	거 당해자치	구의 계획된 자	천 m'
	연녹지면적				
13. 민방위대원수	민방위기본법: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	·치구에 편성된	인
	민방위대원수				

#### ● 대전직할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직할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일정한 율"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정하는 조정률을 말하되,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을 초과하 는 자치구의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정률 = 각 자치구 기준수입액이 합산액 + 조정교부금의 총액 각 자치구 기준수요액의 합산액

- 제 3 조 (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의 수입액은 해당년도 자치구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년도의 결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 년도 기준 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 제 4 조 (기준수요액의 보정) 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의 보 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기타 기준수요액의 산정 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 행하 여야 한다.
  - ②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액을 추가하는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수요에 한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준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 1.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 2. 측정항목및 측정단위 결정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 3. 해당년도 재정정책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ㆍ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 4.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보수 등 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 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기타 광역행정의 목적달성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 에 필요하다고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제 5 조 (기준수입액의 보정)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액의 보 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 1. 자치구세의 증감
  - 2. 자치구의 경상세외수입액의 증감
  - 3.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감
  - 4. 기타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 제 6 조 (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이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조정교부금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의 내역및 산정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치구의 장은 시장에 대하여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교부한다.
- 제 8 조 (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산 정자료는 시장이 작성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 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9 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할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 또는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할 수 없다.
- 제 10 조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

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
-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
- 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기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
-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것
- 제11조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 1. 2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구가 2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교부할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 또는 10월 1일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시보정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기준수요액 보정대상 사업의범위(제4조 제2항관련)

경 비 의	중 큐	수 요 산 정 대 상
1. 지방의회비	가. 의회운영비	○ 의회건물의 신축·개축
		○ 의장단의 운영
2. 일반행정비	가. 건물비	O 구청사 신축
		○ 동청사 신축
3. 사회복지비	가. 사회복지비	O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개축
		○ 무녀복지시설의 신축·개축
	8	○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의 신축
		개축
	나. 생활보호비	○ 영세민 취로 사업
	다. 보건비	O 보건비 신축
		○ 사회단체보조
4. 지역개발비	가. 도시토목비	○ 하천개수사업
		O 하수도 설치·보수
	나, 지역개발비	〇 새마을 가꾸기
		○ 뒷골목 정비
		○ 칠도변 정비
		○ 주민 숙원사업
5. 문 화 교 육 비	1	○ 새마을 유아원 신축
6. 민 방 위	비	○ 민방위 시설의 신축·개축

## 지 방 채 무 현 황

-	cl	91		4	빤	
- 4	10	71	٠	~	1	12/

			7	분	/911	너타	잔액(	(4)			19	2년도 1	/4분기	까지 운	용상황(累計	)		1/4 8	기말 현	재잔액	ĺ	년 :	도별	상 판	제 킥	
					-		यम	( <b>^</b> ,	6	민 액	(B)	W.	•	¶ (C)	्र (त्र	환 대 / 실격 (	<b>₫</b>	(A ·	C) - D (	실적)		193 년도		,	94년도 <	1*
사 업	*				*		분금	이자	4	원공	이자	*	원급	이자	А	원 글	이자	*	원금	이자	4	원급	이자	4	원급	이지
#				at	299,221	20	7.741	91,481	146,473	105,290	41,183	39,877	29,000	10,877	60,449	43,832	16.615	324,545	225,856	98,689	24,651	11,005	13,646	254,001	181.904	72.09
Æ		飬		H	292,531	20	1 , 050	91,481	139,333	98,150	41,183	39, 877	29,000	10,877	54,376 14,554	39,761	16,615	317,854	219,165	98.689	22,031	8,385	13,646	254,001	181,904	72,09
~	股		*	H	10,267	,	8,056	2,211	76,238	50,000	26,238	39, 877	29,000	10,677	3,839	410	3,429	49,836	*36,927	12,909	5.066	1.666	3,400	41,239	34.980	6,2
£.	,	L	*	4	490		410	80							190 155	110 129	80 26	335	281	54						İ
동부	٠.	<u> </u>	. <u>u</u>	박 장					8,664	5,700	2,964	1,456	1,000	456	" ,		61 1	1,449	1,000	449	80		80	1,309	1,000	3
ㅎ수 목	4	<b>E</b> •	비시	}부지 장		2	646	320							4		80	2,966	2,646	320	80		80	2,806	2,646	1
갑원	4	안	도로	계설					12,008	7,900	4,108	12,259	9,000	3,259	900		900	12,259	9,000	3,259	900		900	10,459	9,000	1.4
중촌	<del>.</del>	우회	도모	계설								8,173	6,000	2,173	600		600	8,173	6,000	2,173	600		600	6,973	6,000	9
서고	1 #	£	2	작 장	6,811	5	.000	1,811				13,622	10,000	3,622	1,500		1,500	20,308	15,000	5,308	3,166	1,666	1,500	15.767	13.334	2.4
환 영	선	도	¥ :	박 장	-							4,367	3,000	1,367	202 21		202 21	4,346	3,000	1.346	240		240	3,925	3,000	9:
* *	٠,	4 5	L &	4					26,448	17,400	9,048														i	
조차 <sup>4</sup> 개	항- 4	# <b>e</b>	建设	도로					5,200	3,000	2,200			15						-						

7 <del>*</del>	T			-		'92	45 I/	분기까	h지 운영	상왕(果計)			1/4 분	기말 현지	1잔액		년 5	11	상 완	<b>4</b> 4	
	'91년발 잔액				인 맥 (	B)	¥	4 .	¶ (C)	상 (제목	관  /설계 (I	<b>역</b> D))	(A · C	) - D (1	(책)		93 년도		-9-	년도 이	*
사업별	*	원금	이자	4	원공	이자	×	원급	이자	*1	원 궁	이 자	*	원급	이자	4	원금	이자	×	원공	이자
유통천면 도로 확장				3,342	2,200	1,142															_
중촌등 고가도로 건설				5,776	3,800	1,976															
쓰레기 메립장 조성				14.800	10.000	4,800															
特別會計	282,26	192,994	89,270	63,095	48,150	14,945				52,537	39,351	13,186	268,018	182,238	85,780	16,965	6,719	10,246	212,762	146,924	65.83
公企業 特別會計	257,169	180,026	77,143	63,095	48,150	14,945				50,163	38,456	11.707	243.343	169,372	73,971	15,224	6.216	9.008	191,782	135,354	56,4
上 * 道 * 章	115,93	78.17	37 . 759	13,699	9,000	4,699				6,313	1,966	1,347	114,391	77,/04	36.687	7,083	3,097	3,986	102.534	73,108	29.4
계 정 자 급	57,69	4 39,10	18,593							2,651	662	1	57,053	38,951	18,102	3,021	1,142	1,879	52,022	37,297	14,
지역 개발 기금	22,64	8 15,340	7,308	7,600	5,000	2,600				2,274	891	1,383	22,254	15,240	7,014	2,900	1,619	1,281	17.474	12,830	4.
상수도 공치	6,02	1 4,500	1,521							/			6,021	4,500	1,521				6,021	4,500	1.
주 역 은 행	9	4 4	3 51							94 94	13 43	51 51									L
놓여혼개발기금	17	9 12:	3 56							•		,/	179	123	56	10	4	6	163	119	
0 . E . C . F 均 表	20,78	2 13,45	7,326							974 340	339 174	635	20.442	13.28	7,160	844	304	540	18,964	12,813	6.
1.B.R.D 차 즉	12	5 10	8 17			ì	:	!		39	31	10/	125	101	1 17	33	28	5	53	49	,

(단위:백만원)

			7	분							1921	<b>선도</b> 1/	4분기 7	<b>가지 운용</b>	付某)を合う	0.000		1/4 분	기말 현기	대잔액		W 5	E #	상 환	계 적	
						11년	말 잔 <b>에</b> (	(A)	÷	인 액	(B)	A)	4 4	4 (C)	상 (제목	환 / 실적 (I	약 )))	(A + (	C) - D (1	살책)	•	93 년도		· 9	4년도 이	Ŧ
4 업	4				×		원금	이자	4	원금		<u>я</u>	원급	이자	я	원 금	이자	켸	원급	이자	계	원급	이자	×	원급	이자
ı.	,		<b>자</b>	급	8.	387	5,500	2,887	6,099	4,000	2,099				275 70		275 70	8,317	5,500	2,817	275		275	7,837	5,500	2,3
Ŧ				. *		313	10,071	3,242	15,976	9.150	6,826				1,333	737	596	12,965	9,884	3,081	1,548	1,003	545	10,432	8,331	2.1
0.	ε.	·c	. F	차 전	6.	546	5,113	1,433							580 289	379	201	6,257	4,926	1,331	565	379	186	5,401	4,355	1,0
지역	1	받	기금	(대원)	4.	299	3,000	1,299	3,040	2,000	1,040				240 59		240 59	4,240	3,000	1,240	499	266	233	3,560	2,734	
		,		(충남)	2,	468	1,958	510							513	358	155	2,468	1,958	510	484	358	126	1,471	1,242	
ι.	8.	R .	D	차 관					12,736	7,150	5,786							]								
Ω	Ħ	Ņ	B :	* #	127.	926	91,784	36,142	33,420	30.00	3,420				42,517	35,753 10,000	6,764		81,784	34,203	6,593	2,116	4,477	78.816	53,915	24.
지	억	л	¥ >	기금	26.	317	21,200	7,117	10,820	10,00	820				1,697		1.697	27,89	21,200	6,698	2,822	1,440	1,382	23,798	19,760	4,
4	면	<b>주</b>	4 2	기금	78.	309	50,584	27,725							19,520	15.753	3,763	77,43	50,584	26,855	3,771	676	3.095	55,018	34.155	20
모집	9(4	모	공세	(중은	<b>ż</b> 1,	300	20,000	1,300	22,600	20,00	2,600				21,300	20,000	1.300	0 10,65	10,000	650					-	_
×	M	*	M	<b>#</b> #	25	,095	12,968	12,127							2.374	102	1,470	24,67	5 12,86	6 11.80	1.74	50	3 1,23	8 20,98	11,57	0 9
住名	E 1		<b>15</b> 91	( <b>*</b> 21	25	. 095	12,968	12,127							2,374	895	1,479	24,67	5 12,86	6 11,80	9 1.74	50	3 1,23	8 20,98	11,57	0 9
	린	4	4	4 업	22	. 084	12,213	9,871							2,251	856 97	1,395	9 21.68	8 12.11	6 9,57	2 1.62	9 47	2 1.15	7 18,20	4 10.88	5 7
*	ě	4	4	사 업	,	.011	755	2.256		1	ļ		i		123 24	39/5	84/19	2.98	7 75	0 2.23	o <sup>1</sup> 11	2 3	1 8	1 2.77	6 68	15 2

(단위	:	4	만	원	)
-----	---	---	---	---	---

	구 분							192	년도 1/	(분기 7	<b>∤지 운</b> 성	· 상왕(果計)			1/4 분	기말 현기	대잔액	u 년 도 W			상환계획 .				
			<b>191</b> ₩	발 잔액( 	A)	ક	숭 인 웩(8)		₩ 報 (C)		상 (제3	완 대 / 설택 (	<b>4</b> (D))	(A • 0	:) - D (-	실적)	,	.81 셔츠		•	94년도 •	1#			
사 업 별			4	원공	이자	4	원공	이자	4	원급	이자	4	원금	이 차	4	원급	이자	и	원급	이자	*	원금	이지		
俊 路 负	19 H		6,691	6,691		7,140	7,140					4,071	4,071		6,691	6,691		2,620	2,620						
- k	<b>+</b> #		6,691	6,691		7,140	7,140					4.071	4,071	/	6,691	6,691		2,620	2,620						
한 발 도 서 :		8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여성 회판	신 4	4	2,553	2,553		1,378	1,378					1.277	1,277		2,553	2,553		1,276	1.276		1	_	L		
공무원 교육원	4 신축		2,688	2,688		4,062	4,062					1.344	1,344		2,688	2,688		1,344	1,344			_	L		
북부소방.	시 신	4	n li			1,700	1,700											]							